「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9월 27일, 이창열 의원 발의

○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1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23년 10월 1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산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교육지원과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3조)

2)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)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7조)

4) 산림교육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
산림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,
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선도기관을 지정하여 위탁·지원할 수
있도록 하였으며,
산림교육 지원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'산림교육 활성화 지원' 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
지자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,
관계 법령에 위배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,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